

국방정책연구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사

2011년 9월 19일

국회의원 김학송

글 목차

<국방부>

부실공사 논란에,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국방부 201사업 EMP 방호설비 공사!
업체선정에서 공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1,380억원 군용기 소음관련 ‘국가패소 판결금’
올해는 4,000억원대…
예산 전·이용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패소 판결금’,
대책마련 시급하다.

고질적인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과다이월
1군 지사 이전 등 7개 신규 사업 집행률 ‘0%’

군 의료 임시방편으로 일관 할 때가 아니다!

〈방위사업청〉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예산 부족 편성으로,
사업비 증가, 과다 이전용 등 예산 왜곡 집행, 그리고
전력화 지연까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총사업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고고도 무인항공기 획득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사업 성취도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눈속임 조직인가?
내실 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병무청〉

매년 반복되는 과태료 미수납액
병무청 징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병역 대체 근무자 복무 관리 강화하고
공익근무요원 교육의 불필요한 경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국방부 결산

**부실공사 논란에,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국방부 201사업 EMP 방호설비 공사!
업체선정에서 공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질의

장관님, 저작권 전환 이후 우리 합참이 사용하게 될, 신청사
건설 사업인 201사업, 아주 시끄럽습니다.

며칠 전, 사업 담당 모 중령이 자살을 했고, 행정 담당 6급 군무원은
횡령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감사원은 사
업단의 관리 부실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아직
까지도 특정 업체가 사업단과 법정 공방을 비롯한 시비를 벌이고 있
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201사업 ‘EMP 방호설비’와 관련하
여 개선을 요구했었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왔기에 몇 가
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당시 제 질문의 요지는, 사업발주 방식과 설비업체의 능력,
그리고 예산 문제 등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합참 신청사는 국방 주요시설로, 건설 공사 자체가 국가 방위계획과 연관되어 보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EMP 방호공사는 핵심 군사시설 내 보안장비와 통제시스템을 전자기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설비 작업으로, 이 또한 비밀성이 생명입니다.

즉 국방 시설 내 EMP 방호설비 공사는 고도의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사업의 EMP 방호설비는 비밀공사로, 일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국방부 201 사업단은 대형건설사에 일괄하여 통합 발주시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EMP 방호설비는 특허공법 및 최첨단 설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업체의 설비 능력 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수주한 H건설은, 적격심사 한번 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에게 EMP 방호설비를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201 사업단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번도 문제 제기를 안했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방호설비 업체의 적격 여부를 따지고 들면 설비 업체 두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 문제로, 201 사업 예산으로 총 2,076억원이 책정됐지

만, 낙찰은 예가의 73.7%인 1,531억원에 H건설이 수주했습니다. 저가 낙찰한, H건설은 이 낙찰률을 EMP 방호설비에 적용하여, 빠듯한 설비 예산마저 감액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최초 EMP 방호설비 예산 186억원은, 139억원으로 업체가 자체 감액했고, 여기에다 원청업체인 H건설이 계약 금액의 28%를 이익으로 공제하고 설비업체와 계약하다보니 결국 EMP 방호설비 예산은 100.5억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최초 계획한 예산 대비 54%로 공사를 진행하라는 거죠.

본 의원은 당시 이렇게 감액하고 이익률 공제해서 계약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문제 중 단 한 가지도 개선된 게 없어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해도 국방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원은 EMP 차폐시설 공사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탈락한 하청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방부 시설본부와 H건설을 제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업체는, 지난 6월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이어서, 공사는 장기간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방부는, 탈락한 업체에 문제가 있고, 이번 사업은 시설본부 내규에 통합 발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시설본부 담당자들도, 국방 시설 내 EMP 방호설비는 비밀공사로, 일반건설공사와 분리하는 게 맞으며, 현재 그러한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게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201사업 EMP 차폐설비 공사는,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해서 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방호설비가 제대로 작동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사업 관련자들의 우려입니다.

잘 해도 어찌될지 모르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시끄러우니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201 사업, 2012년 2월이 공사 마무리 시점이고, 4월에는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현재 공사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1사업 관련해서 결산 자료 요구했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장관,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380억원 군용기 소음관련 ‘국가패소 판결금’ 올해는 4,000억원대…
예산 전·이용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패소 판결금’, 대책마련 시급하다.

▶ 개요 및 문제점

국방부 관련, ‘국가패소 판결금’ 이 지급되는 재판은, 차량사고, 폭발물, 부당이득, 공사대금, 화재, 자살사고 등으로,

최근 5년간 ‘국가패소 판결금’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106건에 206억 8천만원,
2007년 121건에 76억 8천3백만원,
2008년 195건에 184억 7천3백만원,
2009년 207건에 454억 5천7백만원,
2010년 196건에 1,480억 7천9백만원으로

2007년 이후 판결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지난해부터는 군용기 소음 피해 소송판결이 나면서 그 배상금이 대폭 증가.

2010년 총 196건의 패소판결금 중 26건 1,380억원이 군용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군용기 소음관련 소송 192건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이 완료될 경우 배상금 규모는 3,500 ~ 4,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음.

* 2011년 2월말 현재 전국 12개 비행장/사격장 대상, 58만명 소송 제기 중

문제는 이러한 배상금과 관련한 국방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편성된다는 것. 2010년도에 35억원, 2011년도에 40억원만 책정되다보니, 국방부는 지난해, 1,359억원을 이전용하여 충당하였음(전용: 99억원 / 이 용: 1,260억원).

더욱이 1심에서의 판결배상금은 2심·최종심으로 지급 시일이 지연됨에 따라 법정이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자만 해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소음저감 노력, 기지 이전 등 근본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판결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도 시급하다는 판단.

▶ 질의

군용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의 대책이 과거 단순한 시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법원에서 판결을 구하는 법률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군 비행장에 대한 소음피해 배상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이후 국방부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장관!

지난해 군용기 소음피해 등 각종 소송 배상금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편성한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방부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하게 된 국가배상금 규모가 1,480억원이고 이중에 1,380억원이 군용기소음관련 국가배상금입니다.

부족한 돈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장관, 올해 초 국방부 현안보고서의 군용기 소음 소송관련 보고를 보면, 국방부는 올해 진행 중인 192건의 소송이 연내 대법원 판결로 이어진다면 최대 4,000억원까지 배상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부법무공단에서 연구용역중이지요?

또 소음피해배상금 지급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있었지요?

소음피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국방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상금 지급 관련하여 기재부 또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국방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원칙 또는 기준이 무엇인지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만이 아니라 1심 판결 배상금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의 배상지연에 따른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일단 공군에 한정해서 지급 지연이자를 추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지급지연 이자는 원금의 연 20%에 2년치 반영, 2012년에 공군 배상추정치 857억원에 대해 342억9천5백만원의 지연이자 발생예상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은 40억원인 것으로 아는데, 장관 어떻게 배상금,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국방부에서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으로 ‘소음저감 노력’, ‘법률적 대안마련’, ‘기지 이전’ 등 근본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고 복잡한 상황에 맞물려, 사업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국방예산에서 매년 수천억 원대의 ‘국가 배상금’을 이·전용한다면 예산 운용을 비합리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배상금은 다수에게 소액으로 소진되는 ‘동족방뇨(凍足放尿)’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판결에 의한 국가배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이는 국방부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배상으로 배상금 마련에 ‘기획재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두 번째 법원 판결이후 배상금 지급으로 군용기 소음피해주민과의 관계를 끝내지 말고 지급이후 배상금이 소액으로 소진되지 않고 피해보상에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주민 접촉 등 지속적 관심을 보여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고질적인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과다이월
1군 지사 이전 등 7개 신규 사업 집행률 '0%'**

▶ 개요 및 문제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과다한 이월과 불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매년 지적되어 온 사안임.

2010년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보면, 3,811억원 예산현액 중 59.6%인 2,269억원 집행되었고, 27.3%인 1,041억원은 이월, 13.1%인 500억원이 불용되었음.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총 26건의 개별사업은 크게 '군용 시설 이전' 과 '군사용 사유지 정리' 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군사용 사유지 정리 사업인 '사유재산정리 사업' 과 예비비 성격의 '행정지원 및 기타 사업' 을 제외하면 총 24건의 집행사업(군용 시설 이전 사업)이 추진되었음.

24건의 개별 사업 중, 육군기록물보존소 등 5건이 2010년 종료되었고, 무건리 훈련장 등 10건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해양의료원

등 9건이 신규로 사업 추진되었음.

24건의 개별 집행사업 예산 3,260억 1천 5백만원은 종료사업에 20.6%, 신규사업에 9.4%, 계속사업에 70.0% 배정 되었으며, 종료 사업은 82%, 신규사업은 25%, 계속사업은 5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표1. 종료/신규/계속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종료사업	67,316	55,362(82%)	774(1%)	11,180(16%)
신규사업	30,649	7,709(25%)	11,797(38%)	11,143(36%)
계속사업	228,050	127,712(56%)	78,946(34%)	22,152(9%)

주목할 만한 점은 24개 개별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11건이었으며, 이중 8건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해 집행률 0%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월·불용된 사유를 보면,

‘1군지사(1군군수지원사령부) 이전’의 경우 원주시의 사업위치 변경 요구 등으로 인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불용됐고,

‘90정비대대’의 경우 실시설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과 사업 순연에 따른 불용, 그리고 ‘51사단 167연대본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이월과 부대 이전지역 변경으로 인한 불용이었음.

〈표2. 집행률 0%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32사단 99연대1대대	256	0	0	256(100%)	종료
1군지사 이전	400	0	0	400(100%)	신규
90정비대대	2,741	0	1,118(41%)	1,623(59%)	신규
5사단 공병대대	628	0	0	628(100%)	신규
15급양대대	2,511	0	0	2,511(100%)	신규
51사단167연대본부	1,175	0	19(2%)	1,156(98%)	계속
5공병여단123공병대대	7,493	0	7,457(99%)	36(1%)	계속
오산기지 영외탄약고	558	0	0	558(100%)	계속

즉 대표적 이월·불용이 공기부족, 주민단체 또는 지자체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협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 주체인 각 군에서 민관군협의체를 구성 몇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음(2010년 무건리 훈련장사업의 경우 10회, 황금박쥐사업의 경우 6회 협의 실시)

이처럼 매년 결산 부진한 사업집행 즉 예산 집행률 저조와 이에 따른 과도한 이월이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0년 결산의 경우 전년도 3.4%에 불과했던 불용액이 13.1%로 대폭 상승한 사안도 검토 요망됨.

▶ 질의

국방부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통합 조정하기는 사업의 재원으로 '07년부터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 때가 되면 국회에서 본 특별회계의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2009년에 1,349억원 예산 대비 32.9%에 달하던 이월·불용 비율이 2010년에는 1,541억원으로 예산 대비 40.4%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불용액이 14.7%로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데, 2010년에 특별히 불용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특별회계로 추진한 24건의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을 보면 신규사업

은 25%. 계속사업 56%, 종료사업 8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용률은 신규사업 36%, 계속사업 9%, 종료사업 16% 였습니다.

더욱이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집행률 0%인 사업이 총 8건에 달해요. 그 중 신규사업이 4건, 계속사업이 3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진입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2010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된 신규사업 9건 중 4건이 예산 한 푼 못 쓰고 사업 시작도 못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집행이 저조한 것은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장관 이와 같이 사안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건리 훈련장사업’이나 ‘황금박쥐사업’에서는 민관군협의체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 민관군협의체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민관군협의체에 참여하는 국방부측의 대표를 해당 사업시행주체인 단위부대 참모장 수준에서 맡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민이나 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단위 부대 수준에서 검토하기에는 수용범위가 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방부나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장관, 사업 추진에 있어 대민 협의가 가장 큰 문제라면, 협의체 운영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또는 관련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신중히 심의하여 예산을 승인해 줘도 본 특별회계와 같이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예산통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유념하시어 귀중한 국가예산 계획대로 올바르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 의료 임시방편으로 일관 할 때가 아니다!

▶ 개요 및 문제점

현역장병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청구되는 건강보험 부담금과 위탁진료비 등 국방부는 군인의 진료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진료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진료지원사업’ 으로 422억 7천 4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하지만 상당 금액이 이·전용되어 사용된 바, 예산 편성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

2010년도 진료지원사업 중 현역병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은 205억 3천 1백만원,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당초예산의 63.4%에 달하는 130억 1천8백만원을 이·전용하고, 전년도 여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19억 5천만원을 더해, 총 354억 9천 7백만원으로 동 사업을 진행하였음.

동 사업은 2009년도에도 예산은 256억 6천만원이었으나, 126억 6백만원이 부족하여 이·전용으로 충당한 바 있음.

※ 2009년도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집행금은 총 346억 5천 7백만원이지만 2007년도 전산 장애로 지급되지 못한 청구금액을 2008년, 2009년에 분납하여 총 지출액이 383억원으로 집계.

이렇듯 예측하지 못한 예산추계로 인해 부족예산을 지속적으로 이·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표1. 최근 5년간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현황〉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건수 (건)	1,223,325	1,401,018	1,224,821	1,205,994	1,213,549
비용 (백만원)	28,288	37,428	32,168	34,657	35,497

또한 현역병이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부담금’ 이외에 간부가 포함되는 ‘민간위탁진료’의 경우도 건수와 비용부담이 계속되고 있음.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중 다빈도로 발생하는 병명은, 외래진료의 경우, 치수염, 상아질 우식증, 매복치 등으로 상위 10건 중 6건이 치과과목이었고, 입원의 경우는 추간판 장애, 연골의 열상 등 정형외과과목이 주를 이루었음.

〈표2. 최근 5년간 민간위탁진료 현황〉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건수 (건)	42,843	38,238	43,330	51,011	46,266
비용 (백만원)	2,611	2,407	3,980	5,497	4,253

동 사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민간 병원 의존도가 높은 과목에 대한 군 의료 질 개선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 질의

올해 유난히 군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나 합니다.

군 의료와 관련한 세부 사안은 국정감사에서 다루겠지만 일단 군 의료 사업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및 간부가 포함되는 ‘위탁진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사업의 경우, 2010년도 집행액은 총 354억 9천 7백만원으로, 이중 130억원이 이·전용으로 충당됐습니다.

지난 2009년도 결산 심사 때도 본 예산 대비 49%라는(126억원) 과도한 이·전용으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2010년에도 여전히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비율로 보자면 예산 대비 63.4%에 달합니다. 매번 지적받고 개선이 없다면 결산 심사 뭣하러 합니까?
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의 경우, 2010년 한해 121만 4천여 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담금 규모는 355억원으로 늘어났어요. 민간진료 1건당 비용이 29,25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6년 23,123원부터 지속적 증가 추세로, 진료건수가 동일하다 해도 예산상의 부담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동사업의 예산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동사업의 예산 마련 방안 또는 예산부담을 경감시킬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지원되는 다빈도 병명을 조사해 봤더니, 최근 5년간 민간외래진료건수 부동의 1위는 치수염이었습니다.

상위 10건 중 6건이 치수염, 만성 치주염 등으로 전체 진료건수의 11.7%에 달하는 14만건 이상이 치과 진료였습니다.

입원의 경우는 추간관 장애, 연골의 열상 등 정형외과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관 우리 장병들이 휴가들 가든지 외출을 해서라도 민간의 치과진료나 정형외과 입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 의료수준과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 위탁진료비 규모는 반비례관계에 있어요.

군 치·의료 환경을 조금만 개선하면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나 민간위탁진료비 규모를 상당액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결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예산 부족 편성으로,
사업비 증가, 과다 이전용 등 왜곡된 예산 집행,
그리고 전력화 지연까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질의

작년 말, 11년도 예산 심의할 때, 공중조기경보기 연부액 부족 편성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먼저 그 부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작년에 공군이 최초 요구한 2011년도 공중조기통제기 예산은 6.2억불, 약 7천억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연부액은 5.27억불이었지만, 전년도(2010년)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산되는 0.9억불을 추가해 약 6.2억불을 2011년에 지불하기로 공군이 보잉사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작년에 기재부에서 1,300억원을 삭감해서 5,700억원을 반영했고, 750억원을 증액한 국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재부 案대로 5,700억원으로 확정됐었습니다.

당시, 2010년에 이어 2011년까지 2년 연속으로 계약된 연부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잉사는 지연 이자에 보상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연부액 중 부족한 예산(0.9억불)은 이 전용을 통해 납부하고, 지급기일 까지 지불하지 못한 0.9억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1호기 인도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장. 11년 부족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11년 편성된 예산 수준으로 11년(5.27억불 → 4.6억불), 12년 연부액(2.16억불 → 2.84억불)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계약 체결(2011년 2월).

일단 다행스럽게도 美사의 협조와 예산 이·전용으로 지연이자나 11년도 예산 부족에서 발생하는 보상비용 등은 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신 전력화 시기가 지연됐고, 예산 집행 왜곡과 내년도 예산 증액 편성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청장, 이 사업 2013년까지 4억불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2012년 예산에는 적절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연이자나 보상비용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중조기경보기 사업, 2010년 결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사업 작년 예산이 2,208억원이었는데, 이중 장비 도입과 관련된 예산은 1.4억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부액 2.83억불을 2.31

억불로 긴급 수정 계약(2009년 12월)했지만, 그래도 0.9억불이 부족했지요

원래는 지연이자 물고, 미지급금, 2011년에 추가 부담하려 했는데, 2011년 예산 역시 요구액 대비 천억 이상 절감 편성되자 이전용으로 해결한 겁니다.

이전용을 통해 작년에 부족한 연부액 메꾼 게, 0.9억불, 1,020억원에 달합니다. 무려 57개 사업에서 이전용을 했어요.

청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업별 이전용액을 최소화하였다지만, 천억입니다.

사업별로, 합동화력운용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 예산의 89%가 이전용 됐고, 울산급 Batch I 사업은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이전용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19개 연구개발 사업에서 100억 원 이상이 이전용 됐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부족 재원을 이전용으로 충당하는 것도 예산 집행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는 데, 그 대상이 또 연구 개발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우선 급한 불 끄자고 우리 방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청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고고도 무인항공기 획득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질의

고고도 무인항공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정보 자산 취득의 중요성이 절실해 졌고, 해서 우리 정부는 MTCR에 저축돼 수출이 불가능한 글로벌 호크 획득을 위해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고무줄도 아니고 획득비가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2005년 당시 고고도 무인기 확보를 위해 고려했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약 1,870억원 정도였어요. 근데 2007년 사업 분석하면서 제시한 총사업비는 2,533억원으로 늘어났고, 사업 착수된 2008년 예산 요구 시에는 3,26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2010년에 이 사업, 총 사업비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최초 검토했던 Block 10 기종이 Block 30으로 바뀌면서 무려 4,538억 원으로 상승했어요. 게다가 2011년 예산 요구 때는 4,854억 원으로 소리 소문 없이 늘려 봤더라구요.

그런데도 방사청은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별 고민도 없이 국회 보고 했고 또 그렇게 총사업비는 조정돼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근데 세 가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첫째는, 미국 내 수출 승인 여부라든가 글로벌 호크의 잦은 고장 문제, 그리고 한국의 뜨뜨미지근한 사업 추진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거죠.

2008년에 사업 착수됐지만,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고, 2009년에는 사업 추진 불확실성으로 예산이 사실상 반영 안됐습니다. 2010년 역시 주장비 예산 전액이 이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호크의 미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제작사인 노드롭 그루먼사가, 한국형 체계개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약 4,000억 원 정도

상승합니다. 총 사업비가 8억 달러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범위까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야깁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호크의 짓은 고장인데, 글로벌호크는 '10년 10월에서 12월까지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했는데, 크게 9가지 결함이 발견되었다 합니다.

물론 방위사업청 답변에 의하면, '11년 5월 기준으로 5가지가 수정조치 완료되었고, 한국 도입시기에는 4가지가 수정 조치될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동 장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단독 장비로 획득이 추진되던 글로벌 호크의 강력한 도전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한국은 2006년 선행연구와 2011년 고고도 무인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에서 글로벌 호크를 유일한 기종으로 정했고, 경쟁 기종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읍저버에 대한 자료를 미국이 제출하지 않아 Roc 수정이라든가 대상 장비로 전혀 고려하지 않와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측에서 글로벌 읍저버의 T/A(기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가 한국의 안보 환경에서 과도하게 높은 Roc고 또 고가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글로벌 오퍼버가 대상 장비 판정을 받게 되면 이 사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국방부와 방사청에서는 고고도 무인기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중고도 무인기 사업을 확대하여 고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 고고도 무인기 사업과 관련하여 방사청의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용 측면입니다. 현재 5천억에 달하는 총사업비가 8천억원 이상으로 증가해도 이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까?

미 운용 평가에서 발견된 고장과 결함이, 완전하게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 본격화 할 수 있습니까?

글로벌 오퍼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측에서 제공되면 본 사업은 경쟁 사업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비용 측면이나 성능 측면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 포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중고도 무인기 사업을, 고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성과관리심의위원회,
방사청의 사업 성취도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눈속임 조직인가?
내실 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 개요 및 문제점

방사청은 개별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실적평가 운영지침 및 ’10년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근거로 사업 관리본부 계획운영부장을 위원장으로 청내 소속팀 과장 7인 이내로 운영하고 있음.

심의회는 분기별로 신청된 사업적기추진 미달성 사업을 대상으로 불가항력사유를 심의하여 그 반영정도를 ‘사업적기 추진율’에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예산현액대비 99%를 이월한 120mm 자주박격포사업의 경우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의 평가는 A(100%)였음.

이는 사업통합관리팀(IPT)의 노력이, 성과실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99%의 예산이월에도 불구하고 사업적기 추진

율은 100%로 둔갑한 것임.

동의원회는 2010년 3분기에 10개 사업, 4분기에 15개 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해 불가항력사유를 심의하였음.

이중 ARTHUR-K 사업의 경우 이월율이 29.4%임에도 불구하고 소요 추가로 사업기간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사업 적기추진율을 100%로 평가하였으며,

K-21 보병차량은 14.3%가 이월됐음에도 침수사고 발생 및 조사, 대책을 이유로 사업 적기추진율을 96%로 평가하였음.

ROC 변경이나 사업추진 방법 검토와 같은 사유와 달리 사고 또는 관련 업체의 과실 또는 소요 추가를 이유로 사업 적기추진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청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동 위원회의 존립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질의

청장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아시죠?

국내 공공기관 중 방사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 IPT가 소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사업적기 추진 미달성 사업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점검하여 사업 적기 추진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성과관리심의위원회 활동상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동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총 25개 사업에 대해 성과관리 심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29일 침수사고 발생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었던 K-21 보병차량사업의 경우,

예산대비 14.3%의 이월이 발생했으나, 침수 사고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사업적기추진율을 96%로 평가했고,

ARTHUR-K 사업의 경우 이월율이 29.4%임에도 불구하고 소요가 추가되어 사업기간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사업 적기 추진율을 100%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작위적인 평가가 어딴습니까?

청장,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청내 인력으로만 채워지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청식구들끼리 바로 옆 부서의 사업을 평가한다면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25건의 불가항력사유 판단결과를 봐도 우려가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25건의 평균 사업적기추진율이 89.6%입니다.

약간만 과장하면 어떤 사업도 성과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하면 89%이상의 사업추진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는 과정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를 높이고, 방위사업청의 업무 성취도가 이만큼 높으니 일 잘했다? 이견 아니지요.

청장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 외부 인사를 초빙하는 방안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무청 결산

매년 반복되는 과태료 미수납액 병무청 징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 질의

병무청의 과태료 미징수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연례적 현상이어서 질문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보증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인, 병무청 별금은 2010년 22억 7,200만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지만, 수납된 금액은 없으며, 3억 5,200만원이 불납 결손 처리 되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미 귀국 시 귀국 보증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제도는 지난 2005년 7월 폐지되었고, 따라서 현재의 과태료 세수는 제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미수납액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징수가 쉽지 않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이후로 징수액이 급감하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아예 징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병무청이나 과태료 부과자 모두 시간 때우기로 일관, 징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청장, 과태료 세수가 이미 폐지된 제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엄연히 법 적용 대상이고 이미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은 국가재정 수입으로 국가재정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징수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도가 유효했던 2005년에는 징수액이 16억 8,400만원에 달했는데,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년에는 1억 2천 5백만원, 2008년에는 4천 3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아예 징수액이 전무합니다.

2010년에 징수가 결정된 22억 7,200만원 중 무재산이 확인되어 결손 처리된 3억 5,200만원을 제외하면, 약 11억원이 채권 시효가 소멸됐고, 소멸 시효가 남은 8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시효가 소멸된 과태료의 경우, 미수납자의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여 결손 처리 등 미수납액을 줄여 나가야 하겠고, 시효가 남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 제도 폐지에 의해 과태료 납부 의지도 징수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여 지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병무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 부분, 제가 확인

을 좀 해야겠습니다. 병무청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 대체 근무자 복무 관리 강화 및
공익근무요원 교육,
불필요한 경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 **질의**

2010년 병무청 결산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지원을 위해 107억 예산 중 106억원을 집행하고 1억 3천만원을 불용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지원인력 지원에 4억 천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90억 천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10억원, 병역사항 공개에 1억 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지원 인력에 대한 복무 실태 조사를 위해 3억원, 공익근무요원 실태 조사 및 관리 감독 등을 위한 여비로 4억 8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장, 보고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산업지원 인력 복무실태를 위한 요원이 얼마나 되지요?

그럼 실태조사에 사용된 3억원은 실태 조사 요원들의 여비 등으로 지출한 것입니까?

현재 병무청이 관리해야할 지정업체가 6,831개 업체에 복무 인원만 28,037명에 달합니다. 1차적인 복무 감독 책임은 업체에 있겠지만 동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병무청이 자랑하듯, 2010년에 부실 감독 업체와 복무 부실 적발자가 줄었다고 해서 이것이 성실 복무를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은데, 지난 2009년과 비교해서 작년에 특별히 산업지원인력 관리를 위해 보완된 제도나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기에, 병무청이 주장하듯, 복무 부실률 발생이 급감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무지도관 교육에 5억원, 실태 조사 및 감독자 여비에 4억 8천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무지도관은 67명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근데, 관리해야할 공익요원이 5만 3천 5백명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복무지도관 1명이 800명의 공익요원을 관리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복무이탈자 등 복무 위반자가 2007년 5,985명 대비 2010년 2,691명으로 55% 감소했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병무청의 엄정한 관리감독의 성과라기보다는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볼 수도 있는 결과치입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의 성실한 복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 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 92억원 중 91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근데, 집행 내역을 보면, 교육시설 임차료와 교육 여비로 79억 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집행예산의 87%가 교육과는 상관없는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복무부실을 방지하겠다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성과 분석에 보다 많은 투자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책은 무엇인지요?

※ 현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6개 교육센터 시설 등의 임차료로 2010년 예산의 34.4%인 3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러한 소모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국방위원회 등은 군 시설이나 자체 통합교육센터를 설립할 것을 요청해 왔음. 이에 병무청은 충북 보은군에 교육훈련시설(숙박, 체육 시설 겸비)을 건립하는 안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총 사업비 464억원을 들여 2012년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음.

